

의안번호	제 172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1월 1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07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직속기관·사업소의 설치 근거 관련조항 등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 존속기한이 도래한 사업소 한시기구의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및 행정 수요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근거 관련조항 개정

○ 조례 목적 관련규정(제1조) 개정

-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를 제110조 내지 제114조로 개정

○ 직속기관 설치근거 관련조항(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개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개정

※직속기관 :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 사업소 설치근거 관련조항(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개정

-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제114조로 개정

※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청남대관리사업소, 여성발전센터, 내수면연구소

□ 기구신설·폐지 및 분장사무 조정

○ 기구 신설 : 생명산업본부

※ 생명산업추진단(사업소, 한시기구)을 본청 국단위 한시기구로 전환

○ 기구폐지 : 생명산업추진단

○ 명칭변경

- 건설재난관리본부 ⇒ 건설방재본부
- 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

○ 분장사무 조정

- 건설방재본부
 -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에서 이관)
- 생명산업본부
 - 생명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관리 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
 -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이벤트 기념사업
 -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 오송신도시 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 개정

○ 금번 조직개편에 의한 다른 조례 개정 : 17건

※ 「충청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외 16건

○ 부서장 명칭 미정비 조례 정비 : 3건

※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외 2건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1조 내지 제105조”를 “110조 내지 제114조”로 한다

제5조 중 “건설재난관리본부”를 “건설방재본부”로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고 “문화관광환경국” 뒤에 “생명산업본부”를 신설한다.

제7조제3호 중 “비상대책”을 “갈등관리”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재난관리본부”를 “건설방재본부”로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비상대책”을 신설한다.

제12조 중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4조(생명산업본부)생명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관리 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
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이벤트 기념사업
4.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등 유치에 관한 사항
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8.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9. 오송신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10.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제16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4”를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하며,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하
며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하
며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하
며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제28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같은 조 제1항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하
며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제31조 내지 제33조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장 중 “제2절”을 “제1절”로, 제36조를 제34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하며 제37조 내지 제39조를 제35조 내지 제37조로 한다.

제4장 중 “제3절”을 “제2절”로, 제40조를 제38조로 , 같은 조 제1항 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하며 제41조 내지 제42조를 제39조 내지 제41조로 한다.

제4장 중 “제4절”을 “제3절”로, 제43조를 제41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를 제42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제4장 중 “제5절”을 “제4절”로, 제47조를 제45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하며 제48조 내지 제49조를 제46조 내지 제47조로 한다.

제4장 중 “제6절”을 “제5절”로, 제50조를 제48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하며 제51조 내지 제52조를 제49조 내지 제50조로 한다.

제4장 중 “제7절”을 “제6절”로, 제53조를 제51조로, 같은 조 중 “제105조”

를 “제114조”로 하며 제54조 내지 제55조를 제52조 내지 제53조로 한다.

제4장 중 “제8절”을 “제7절”로, 제56조를 제54조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

105조”를 “제114조”로 하며 제57조 내지 제59조를 제55조내지 제5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30일까지로, 생명산업본부와 그 소속인 사업총괄팀·기반조성팀·박람회기획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제17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⑱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⑲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⑳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투자본부, 균형발전본부, 농정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 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생략)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생략) 3.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비상대책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4. ~10.(생략)	제1조(목적)①----- -----제110조 내지 제114조----- ----- ----- ----- ----- ----- ----- ----- ----- -----. (현행과 같음)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투자본부, 균형발전본부, 농정본부, <u>건설방재본부</u>, <u>보건복지여성국</u>, 문화관광환경국, <u>생명산업본부</u>, 소방본부를 둔다 (현행과 같음) 제7조(자치행정국)----- -----. (현행과 같음) 3.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u>갈등관리</u>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10조(생략) 제11조(건설재난관리본부)건설재난관리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생략) 6. 민방위·경보통제·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 7.~8. (생략) 제12조(복지여성국)복지여성국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9.(생략) 제13조(생략)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설방재본부)건설방재본부장----- -----. (현행과 같음) 6. 민방위·경보통제·국가기반보호·비상대 책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제14조(생명산업본부)생명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관리 및 전시관· 홍보교육관 건립운영 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이벤트 기념사업 4.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생명과학단지내 정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8.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9. 오송신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10.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생략)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과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설치)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 ----- ----- -----.
②(생략)	(현행과 같음)
제16조~제17조(생략)	제17조~제18조(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설치)①-----제113조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9조~제21조(생략)	제20조~제22조(현행과 같음)
제22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설치)①-----제113조-- ----- -----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23조~제25조(생략)	제24조~제26조(현행과 같음)
제26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7조(설치)① -----제113조-- -----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7조~제28조(생략)	제28조~제29조(현행과 같음)
제29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제30조(설치)①-----제113조-----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0조~제32조(생략)	제31조~제33조(현행과 같음)
제4장 사업소	(현행과 같음)
제1절 생명산업추진단	<삭제>
제33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생명산업추진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이하 “생명산업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삭제>
②생명산업추진단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삭제>
제34조(단장)생명산업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삭제>
제35조(소관사무)생명산업추진단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삭제>
1. 생명산업 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삭제>
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이전 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	<삭제>
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이벤트 기념사업	<삭제>
4. 생명과학단지 조성에관한 사항	<삭제>
5.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등 유치에 관한 사항	<삭제>
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삭제>

현행	개정안
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삭제>
8.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삭제>
9. 오송신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삭제>
10.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
제2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제1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제36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 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이하 “도로관리사 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설치)①-----제114조- -----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7조~제39조	제35조~제37조(현행과 같음)
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제2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제40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 림의 경영과 보호관리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 하“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8조(설치)①-----제114조- -----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1조~제42조(생략)	제39조~제41조(현행과 같음)
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제3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제43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 북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축산위생연구 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1조(설치)①-----제114조- ----- ----- ----- -----.
②(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제46조(생략)	제42조~제44조(현행과 같음)
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	제4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

현행	개정안
제47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생략) 제48조~제49조(생략)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제50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51조~제52조(생략) 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3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생략) 제54조~제55조 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45조(설치)①-----제114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제47조 (현행과 같음) 제5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제48조(설치)① -----제114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제50조(현행과 같음) 제6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1조(설치)①-----제114조-----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52조~제53조(현행과 같음)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현행	개정안
제56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 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내수면 연구소”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생략) 제57조~제59조(생략)	제54조(설치)① ----- 제114조 ----- ----- ----- ----- ----- ②(현행과 같음) 제55조~제57조(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 구성)①~②(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복지여 성국장,문화관광환경국장 2.위촉직 위원 :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단, 사회단체보 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③ ----- 1.-----: -----, 보건복지여 성국장,----- 2.-----: ----- ----- ----- -----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구성등)①(생략) ② 당연직위원은 균형발전본부장·농정본부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혁신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현행과 같음) ② ----- 건설방재본부장,----- ----- ----- ----- -----

현행	개정안
제17조(구성등)①(생략) ②당연직은 복지여성국장·문화관광환경국장으 로 하고, 위촉위원은 복지환경, 문화관광, 여 성정책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생략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여성국장 · ----- ----- ----- -----.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충청북도교육청교육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노동부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장, 법 무부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생략)	(현행과 같음) ③----- ----- ----- 1.----- : -----, 보건복지여성국장 ----- ----- ----- 2.(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충청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회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행정부지사·자치행정국장·복지여성국장 2. ~3.(생략) ②(생략)	제3조(구성)① ----- ----- ----- ----- -----. 1.-----보건복지여성국장 2.~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 구성등)①(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 2. ~5.(생략) ③(생략)	제3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 1.-----,-----,----- -----, ----- <u>건설방재본부장</u> 2.~5.(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 이 된다. ③~⑦(생략)	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건설방재본부장</u> 이----- ③~⑦(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 2.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생략) 제8(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 이 된다 ④~⑥(생략)	제7조(회계공무원)① ----- ----- -----. 1.----- : <u>건설방재본부장</u> 2. -----: ----- ②(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②(현행과 같음) ③----- ----- <u>건설방재본부장</u> 이 ----- ④~⑥(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시험비용의 제한)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비용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 ②-----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생략)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과 업무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생략) ③-----보건복지여성국장을-----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생략)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보건복지여성국장----- -----. ③(생략)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3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37조(회계공무원) ①----- ----- 보건복지여성국장----- -----. ②(생략)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생략)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여성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생략) ----- ----- 보건복지여성국장----- -----. ②(생략)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2조(구성)①(생략) ②-----보건복지여성국장-----. ③(생략)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③(생략)	제3조(구성)① ----- ----- -----보건복지여성국장-----. ②~③(생략)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 ----- -----보건복지여성국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u>사회복지과</u>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생략) ②-----복지정책과장----- -----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생략) ②-----보건복지여성국장----- -----.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12조(구성)①(생략) ②-----보건복지여성국장----- ③(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등)①(생략) ②당연직위원은 도소속 공무원으로 경제통상국장·복지환경국장·농정국장·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민간인,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 위촉한다. ③(생략)	(현행과 같음) ②-----경제투자본부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본부장·건설방재본부장----- ----- -----.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 (인구 800만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나 부군수·부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대학 및 전문대학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중 대학이나 전문대학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4.(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기준】

제7조(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③(생략)